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017
----------	-------

발의연월일 : 2023. 10. 5.

발 의 자 : 박주민 · 윤관석 · 윤준병
 · 용혜인 · 남인순 · 권칠승
 · 한준호 · 전재수 · 윤호중
 · 박범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변호사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열람 · 등사의 범위 및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의 판단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현행 법상으로 법원의 열람 · 등사 불허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바, 이로 인하여 공판기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소송기록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신청을 불허할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4조의4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불복할 수 없다”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소송기록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판기록의 열람·등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94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② (생략)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 ----- ----- ----- ----- ----- ----- ----- ----- ----- <u>. 다만,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소송기록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u>
④ (생략) <신설>	④ (현행과 같음) ⑤ <u>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u>

⑤ (생 략)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u>불복할 수 없다.</u>	<u>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u>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u>
---	--